

보도설명자료 (’18. 5. 29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실효성 없는 스마트폰 배터리 ‘안전인증’ 기준

(18.5.29, 헤럴드경제)

1. 기사내용

- 일정 조건의 배터리를 안전인증 대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안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 중

* 에너지밀도 700Wh/L 이상, 충전전압 4.4V 이상 스마트폰, 태블릿PC, 노트북용 리튬 배터리 단전지(cell)

- 그러나 현재 삼성, LG 스마트폰 중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배터리가 전무하여 실효성 의문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안전인증 대상 배터리는 당초 모든 배터리가 아니라 위험성이 고도로 높은 배터리를 대상으로 한 것임

- 에너지밀도 700Wh/L 이상, 충전전압 4.4V 이상일 경우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제품 구조와 공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음

- 조건에 부합하는 배터리는 전체의 2.7% 수준이나 (15-16년 안전확인 신고 제품 기준),

구분	노트북(147개)	스마트폰(100개)	태블릿(49개)
2가지 조건 모두 충족	6개(4%)	1개(1%)	1개(2%)
에너지밀도 700Wh/L 이상	8개(5.4%)	1개(1%)	3개(6%)
단전지 충전전압 4.4V 이상	57개(38.8%)	20개(19.8%)	12개(24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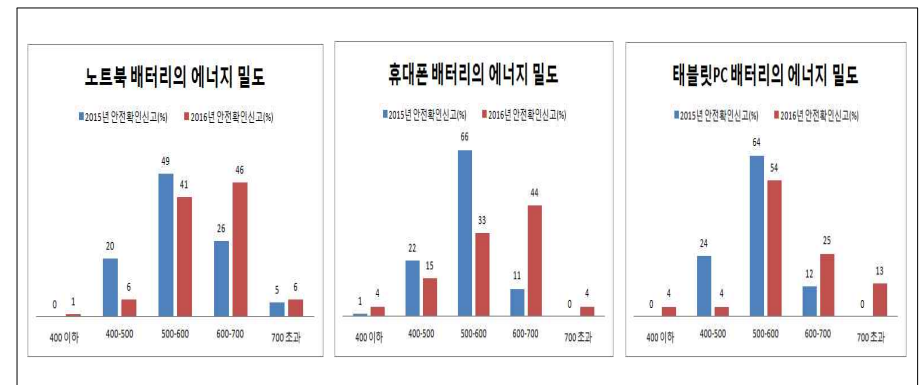
- 유예기간 (2년)을 감안할 경우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는 보다 많은 배터리가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

*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64조 : 유예기간은 제품구조 변경 필요시 1년, 제품설계 또는 공정 변경 필요시 2년

- 에너지밀도는 700 이상 조건을 만족하는 배터리가 현재 소수이나, 빠른 속도로 상승 추세

- 입법예고 기간 (’18.5.23 ~ 7.20) 중 업계의 배터리 에너지밀도 동향 및 추이를 점검하고 필요시 에너지밀도 조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음

< 배터리 에너지밀도 추이 >



- ※ 문의 :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박해범 사무관 (043-870-5446)
허인선 주무관 (043-870-5447)